

◆ 政府 施策 ◆

상공부, 1994년도 정책 방향 – 제반 경제행정 규제 획기적 완화등 포함 –

상공자원부는 금년 한해동안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활력회복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특히 금년도 업계의 설비투자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의욕적인 투자계획이 최대한 실천될 수 있도록 외화조달기회를 확대하는등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함께 공장입지, 물류등의 기업경쟁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수출은 작년보다 9.2%가 증가한 900억달러, 수입은 7.4%가 증가한 900억달러로 국제수지 기준으로 30억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이의 달성을 위해 민관합동 수출활성화 대책회의를 매분기별로 개최, 수출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총력수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우리경제의 현안이 단기적으로는 투자와 수출의 촉진, 노사화 합과 물가안정을 통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제, 이같이 밝혔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상품별 품질향상 계획도 수립, 추진하고 상표·디자인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유망수출상품에 대한 일류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리 수출규모에 상응하는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해외시장개척기금의 규모를 지난해의 2배인 200억원 규모로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자기상표개발과 해외 판매망 구축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법을 개정, 보험활용률을 높이고 연불수출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며 지원요건을 완화, 선박과 산업설비의 수출증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제 무역연수원과 한국무역홍보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전시수요 증가에 대처, 제2종합 전시장(부산) 건설에도 착수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기업의 투자의욕을 실현하는데는 노사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분석, 금년에는 노사화합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임금수준의 조기합의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설비투자의 주체인 기업의 활동을 지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들수 있도록 제반 경제행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 분야별로 발굴된 200여건의 과제를 비롯 작년에 제정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바탕으로 상공지원 분야외에도 모든 경제활동에 관련된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이같은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바탕으로 중기적 시각에서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사업으로 본격적인 기술혁신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산업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기술개발을 위한 하부구조를 확충하는 동시에 조직과 정책수단도 과감히 기술 드라이브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신기술과 신상품의 개발을 통해 우리상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한다는 방침아래 주요업종별로 신기술개발계획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액정소자·멀티미디어등 12개 기술과제는 중기과제, 차세대 자동차·첨단생산시스템 등 5개 과제는 장기과제로 선정, 핵심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요 산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 자동차·조선·전자등 대규모 조립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충과 기술개발을 추진,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는 금년부터 본격화될 지방화시대에 대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별로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이를 기초로 시도에 2천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기술보육사업’과 내수시장에서 주력하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수출기업화사업’을 금년에 새로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응,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화 전략도 본격 추진키로 하고 UR체제에 맞춰 무역과 산업에 관련된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춰 정비하되 국내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통상면에서는 과거의 통상마찰 해소 위주에서 탈피,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통상마찰 예방과 산업협력을 강화하며 선진국·개도국·동구권등 시장별 특성에 맞춰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구조개편도 동시에 추진, 이미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가연동제를 계기로 지금까지 가격관리, 수급안정, 에너지 절약등의 이유로 존속돼 오던 각종 규제를 풀어 에너지 산업의 자율화를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도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올리지 않았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의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적정수준인 33%로 점차 높이고 사용시간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차등적용하는 방법등으로 하반기중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가스등 에너지 산업분야에서의 설비증설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 국민의 에너지 수요가 청정에너지인 가스·전기·원자력으로 선진화함에 따라 LNG(액화천연가스)의 추가 공급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원자력발전소의 입지확보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 입지 제공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유망 先進技術 企業 200社 선정 – 상공부, 세계일류 技術水準 조속育成계획 –

상공자원부는 유망중소기업중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업체를 조속히 세계일류 기술수준까지 육성키 위해 올해 약 200개사를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 종합적인 기술지도와 함께 정책자금 우대지원등 각종 지원책을 펼 계획이다.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83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제도와 지난 9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술선진화 업체 지정제도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들 제도를 본격적으로 통합운영키로 하고 기술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망선진기술기업 선정은 종전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유망중소기업중에서만 선정키로 했다.

대신 지난해까지 시행해온 기술선진화 업체의 경우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매출액의 5% 이상인 업체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현재 전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중이 0.2%수준에 불과한 실정인 점등을 감안,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망선진기술기업제도는 3% 이상인 업체로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상공부는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진청으로부터 품질경영과 표준화, 시험계측,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경영관리와 정보화, 자동화, 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생산기반기술과 신기술 개발등 기술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각종 정부시책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병역특례업체 선정추천과 단체수의계약물량 배정시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업계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업체선정과 지원실시 시기도 앞당기기로 하고 업계의 신청을 오는 2월 19일까지 공진청 화섬기술과 (전화 : 503-7920), 중진공지도관리과 (전화 : 769-6794), 생산기술연구원 기술자문실 (전화 : 837-2071 / 3) 등을 통해 접수키로 했다.

상공부는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3월중 공진청등 지원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을 실시, 예년보다 4개월 정도가 빠른 4월중 유망선진기술기업을 확정하고 5월부터 기술지도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유망중소기업제도는 지난 83년부터 도입, 현재 3600여개사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우대금리 적용등 금융지원을 받고 있고 지난 90년부터 실시된 기술선진화 업체 지정제도는 현재 457개사가 지정돼 있다.

工產品 형식승인 規制 대폭 축소 - 檢查項目 줄이고 기간도 단축 -

정부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있는 공산품의 형식승인제도를 대폭 개선, 11개 부처 30개 법령에 근거한 23개 부문의 형식승인 및 검사·검정제도중 10개 부처소관 20개 부문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공산품 형식승인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산품의 구조·성능·품질등 형식(Model)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만 제조하거나 수입·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기업활동에 대해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주고있는 점을 감안, 이같은 개선책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 위해나 보건·환경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품질향상 및 기기의 정밀도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다른 제도로 통합(계량기·자동차 배기가스검사기·소음진동측정기등)키로 했다.

또 현재의 발전된 기술수준에 비추어 소비자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문제가 없거나 국제협약상 형식승인이 임의화된 품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 전기용품은 현재의 306개에서 256개, 건설기계는 26개에서 9개, 열사용기자재는 25개에서 15개, 가스용품은 12개에서 10개, 승강기 부품은 27개에서 20개, 어선 및 어선용품은 38개에서 14개등 총 6개 부문에서 110개 품목을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6개 부문중 성격상 유효기간 설정이 무의미한 어선 및 어선용품, 해양오염방지 자재 및 약재등은 유효기간을 영구화하고 소비자 안전확보상 유효기간 설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기간을 연장(전기용품 3년에서 5년, 전기통신기자재 3년에서 7년)할 계획이다.

전기통신기자재와 무선기기등은 기업이 시험·검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험설비 및 인력을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 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용 기계 및 기구 (19개 품목), 유해위험기계 및 기구, 가스용품 (2개 품목), 전기용품 (19개 품목), 승강기 부품 (7개 품목) 등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동차, 선박 및 선박용 물건, 해양오염방지설비, 해양오염방지 자재 및 약재, 소방용 기계 및 기구, 건설기계, 유해·위험기계 및 기구, 열사용기자재, 가스용품, 승강기 부품등에 대한 형식승인처리기간도 단축토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의 이같은 개선안은 건설부등 관계부처가 제출한 자체개선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는데 앞으로 열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1단계 검토에서 개선이 미흡한 부문 및 누락된 부문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계속 수렴, 공산품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금년중 완료할 계획이다.

상공부 관계자는 이번에 형식승인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 것은 그동안의 형식승인제도가 운용부

처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단편적으로 도입, 운용된 결과 제도가 복잡하고 부처별 규제내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電力예비율 12% 이상 유지 – 전기 多消費제품 高效率化 강구 –

상공자원부는 금년에도 전력공급예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10%대에서 안정시킨다는 목표아래 발전소의 조기준공과 수요관리 강화등 전력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올해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보다 12.7%가 증가한 2446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령·삼천포 발전소등 8개 발전소 245만KW를 전력성수기인 여름철이전까지 준공하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 15개소 24만KW를 활용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통해 올해 전력공급능력을 지난해의 2463만5천KW 보다 11.7%가 증가한 2752만 2천KW로 확충, 전력공급예비율이 12.5%(93년 13.5%)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수요관리 강화에도 주력, 고효율 조명기기 장려금 수혜대상 확대와 효율등급 제의 확대를 추진하고 전동기와 조명, 전기로, 사무자동화기기등 전기 다소비 제품에 대한 고효율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빙축열과 가스냉방, 지역냉방등 전기수요 대체 냉방설비의 보급을 촉진하며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요금 구조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政府入札·契約제도 국제 慣行化 – 財務部, 調達市場개방대비 조달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정부는 오는 97년 政府調達市場의 개방에 대비해 入札·契約 관련제도를 국제관행이나 작년말 타결된 政府調達協定에 맞춰 개선키로 했다.

금년중 예산회계법을 비롯한 정부조달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96년에 보강해 97년부터 조달시장개방에 대응한다는 추진일정을 짜놓고 있다.

財務部가 마련한 '정부조달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금년중 개정할 조달관련 법령은 ▲ 예산회계법 및 同法 시행령 ▲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및 규칙 ▲ 외자구매 규정 ▲ 회계예규 및 통첩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회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조달제도 전반에 걸쳐 外國人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없애고 조달체계도 국제규범에 맞추기로 했다.

물품제조·공사발주시 이용하는 예정가격에 대한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예정가격작성의 기초가격인 政府勞賃 단가를 市中勞賃에 맞춰 현실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반경쟁입찰대신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指名경쟁입찰을 활성화하고 隨意契約은 정부조달협정에 맞게 대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또 입찰자격심사는 조달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세부심사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무자격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 공고는 현재 입찰일 또는 개찰일전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協定규범에 맞춰 공고일부터 접수일이 40일이 되도록 연장키로 했다.

讓許대상을 입찰할 경우에 입찰공고 내용에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요약 공고를 英語로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현재 도급한도액 위주의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을 공사이행 실적, 신인도, 재정상태, 기술적 능력보유등 실제계약 이행능력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제한적최저가 제도 이외에도 종합낙찰제·설계시공입찰제도·대안입찰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재무부에 紛爭審議委員會를 설치해 입찰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조달제도 개선방안

▲ 調達法之 개선 = 현행 예산회계법은 특별히 내·외국인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제 입찰의 경우에 '외자구매계약규정'과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을 제정해 시행중.

이에따라 입찰공고기간, 입찰보증금, 입찰서 개찰후 조건변경, 대가지급, 분쟁처리등에 관한 특

례가 있음.

정부는 조달제도 전반에 걸쳐 외국인에 대한 특별규정을 폐지하고 조달체계 전반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계획.

▲ 豫定價格 = 현재 조달기관이 각각의 예정가격을 작성해 사용중이며 공사계약은 예정가 규모에 따라 입찰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이 다르고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노무비등에 대해 정부가 공표. 정부는 ‘예정가격작성준칙’을 개정해 조달물품이나 공사의 성격에 따라 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격인 정부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보다 낮게 고시되는 현제도를 개선.

▲ 入札방법 = 현재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제한된 조건하에 指名경쟁입찰방식과 隨意계약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 정부는 외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명 경쟁입찰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조달기관이 발주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자격있는 공급자를 지명해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단체수의계약의 사유를 協定조문에 맞춰 축소·개선.

▲ 資格審查 = 현재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일부공사에만 자격심사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법령에 의한 자격만 갖추면 입찰이 가능함. 앞으로는 각 조달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인 자격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조달기관별 인증공급자 명부를 작성

▲ 입찰공고기간 = 현재 입찰공고는 입찰일 또는 개찰일전 10일 이내에 하도록 있으며 공사 입찰은 현장설명 전일로부터 7일이전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協定에 맞춰 입찰공고기간을 연장함(40일).

▲ 입찰공고의 방법 및 내용 = 예정가격이 일정금액(공사 3억원, 제조 1억원) 이상인 경우 官報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나 관보를 協定文 부속서에 따른 출판물로 등록하는 한편 讓許대상 입찰시에는 政府調達協定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기. 요약공고를 英語로 함.

▲ 指名입찰시 입찰참가자 선정 = 현재 도급한도액 위주의 지명경쟁입찰을 개선해 도급한도액, 공사이행실적, 신인도, 재정상태, 기술능력등 계약이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자를 발주관서가 지명.

▲ 낙찰제도 및 이의신청 = 현재 最低價 낙찰제가 원칙이며 일정금액이하 공사·용역은 制限的 최저가 제도를 채택중이나 종합낙찰제·설계시공입찰제·대안입찰제를 활성화. 협정에 따라 입찰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財務部에 분쟁심의위원회를 신설.

소액 海外投資 認證制 도입 – 財務部, 해외투자 擴大방안 2월말 실시 –

許可를 받는 대신 申告만으로 해외투자가 가능한 海外投資事業의 범위가 현재 500만달러 이하 사업에서 1천만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또 海外投資 추진업체는 시중·지방·국책은행등 외국환은행(본점)에서 투자 자금 융자교섭과 동시에 투자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특히 30만달러 이하의 소액투자는 許可나 申告대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지점)을 통한 認證制 가 도입되며 현재 60~80%인 해외투자자금의 융자비율이 80~90%로 상향 조정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규정 개정을 거쳐 내달 20일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은 우선 현재 해외투자를 奨勵사업·一般사업·制限사업으로 나눠 허가 및 자금지원면에서 차별화하고 있으나 장려사업을 없애고 현재 1개인 제한업종을 더욱 줄여 모든 해외투자를 현재의 장려사업에 준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輸出入銀行의 해외투자자금과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등의 지원비율이 중소기업 90%~대기업 80%로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財務部는 또 해외투자시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진출이 가능한 사업을 투자규모 1천만달러 이하 (투자건수의 99%)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자금을 융자할 경우 해당업체의 해외투자를 신고수리할 수 있는 기관을 현재 輸銀·產銀·企銀등 3개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환은행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輸銀·產銀은 투자규모가 1천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융자를 실시하는 경우는 한은허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30만달러 이하의 소액투자(53%)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인증을 받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아울러 해외투자 허가·신고의 신속화를 위해 100만 달러 이하의 투자(84%)에 대해 서는 신고서와 투자개요서등 두가지로 신고서류를 간소화키로 했다.

투자 규모가 1천만달러를 초과해 해외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라도 3천만달러 이내이면 주무부 심의만을 하도록 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종합상사의 자산운용용 해외부동산투자를 자유화키로 했다.

금년 해외투자자금 지원규모는 전문지원기관인 輸銀이 2천억원, 기타 외국환은행이 24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有望輸出企業 기술지도강화 －工振廳, 올해 1천개社 現場指導 계획－

공진청은 수출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전담지도원을 파견, 현장애로 기술을 중심으로 책임지도를 실시한다.

공진청은 수출품 자율검사제 실시에 따른 현장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금년중 1천개 수출유망기업을 선정,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이나 품질상의 이유로 클레임이 제기됐던 분야를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같은 수출유망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산하 6개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키로 하고 과거 수출검사 불합격률이 2%인 이상이면서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유망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담당할 의류시험검사소등 공진청 산하 6개민간 시험검사기관은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유망업체를 선정해 정부보조로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기관들은 특히 과거 수출품 품질검사를 통해 파악된 수출업체별 문제점이나 산업별 기술으로 요인을 중심으로 기술지도를 실시, 수출품 불량률을 낮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994년도 품질경영진단 계획 고시

공업진흥청은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7조(품질관리진단등)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품질경영진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공업진흥청 고시 제 1994-317호, '94. 1. 22) 했다.

1. 목적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경영체계 확립 및 KS 9000 /ISO 9000 인증획득 지원

2. 진단대상

- 품질경영 등급업체
- KS업체, 기술선진화 업체, 세계일류화 업체
- 유망 중소기업 및 품질경영 진단효과가 기대되는 업체

3. 진단내용

- 진단기준 : 품질경영시스템 진단기준(QM 시리즈 93-2) 및 품질시스템 심사기준
- 진단내용
 - 품질경영 시스템 조직 및 품질보증체계
 - KS 9000 /ISO 9000 인증획득에 필요한 품질매뉴얼 작성 및 활용

4. 절차방법

- 진단기간 : 1994년 2월 12일 ~ 1994년 10월 31일
- 진단업체수 : 600업체 (진단지도 150업체, 진단 450업체)
- 진단일자 : 진단지도 1업체당 30일이내, 진단 1업체당 1~2일
- 진단방법 : 진단요원의 현장방문을 통한 진단지도 실시
- 진단절차 : 공업진흥청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각 진단기관에 의뢰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 : 공업진흥청 (인증관리과)
- 접수일자 : 1994년 1월 20일 ~ 2월 12일 (22일간)

6. 진단비용 : 선정업체에 대한 비용은 정부와 업체 공동 부담

- '93품질경영진단 업체중 우수업체 : 비용의 100% 정부에서 부담
- 품질경영 등급업체 : 비용의 90% 정부부담, 10%업체부담
- 기타업체 : 비용의 75% 정부부담, 25% 업체부담

7. 진단기관

- 한국공업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품질관리기사회
- 경기지방공업기술원등 11개 지방공업기술원 및 전기검사소등
6개 검사기관
- 쌍용자동차(주)등 40개 모기업 심사(진단)기관

8. 우대조치

- KS 9000 /ISO 9000시리즈 인증획득 지원
- ISO 관련 국제정보 제공 및 자료발간 배포 등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처는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과학기술처 공고 제 1994-3호, '94. 1. 20) 했다.

1. 개정취지

경제행정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일부 개정 ('94. 1. 5. 공포, 법률 제 4,711 호)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부가통신업 및 연구 및 개발업을 추가함.
- 나. 개정법률에서 기술개발준비금 강제적립근거 및 적립신고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과학기술처 장관이 준비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는 자의 기준, 준비금의 적립신고사항 변경제도 및 연구 시설의 설치권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다.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종합연구소 (1개 기업당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 단, 중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안정함으로써 조세
 - 자금 · 병역특례등 지원근거를 마련함.
- 라.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자연계 분야의 전문대졸업자 또는 기술계의 기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자연계 이외의 연구전담요원의 채용 가능분야에 기존의 정보산업분야외에 산업디자인 분야를 추가함.
- 마.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영리 연구법인의 기준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 및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기술 수출계획을 신고한 자의 보고 의무 등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 징수절차 및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처 기술개발과 (503-7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